



: 2017-03-17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976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A

검사 이환기(기소), 김현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2. 3.

주문

-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타이어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대전 동구 C 소재 건물 1층을 D로부터 임차하여 E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14. 8.경부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D는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차임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 2017-03-17

2015. 10.경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이 2015. 12. 14. 위 E 대리점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카리프트 3조, 얼라이어먼트기 1식, 휠바란스기 1조, 타이어탈착기 1조, 자동차휠 24개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E 대리점에서 압류된 위 물품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정본(2014가단231139), 유체동산압류조서(2015본5079), 압류물점검불능조서(2015본5079)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압류된 물품을 처분하면 처벌을 받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을 좌우할 수 없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압류 집행 과정에서 공시서, 안내문 등의 기재에 의하여 압류된 물품을 손상, 은닉, 처분하면 형벌을 받게 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2017-03-17

형법 제14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지 불과 이틀여 만에 압류물품을 처분하여, 강제처분 표시의 기능을 침해한 정도가 큰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채권의 변제를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4. 27.경 발생한 사업장의 화재로 인하여 그 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결국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진홍 _____